

제 809 호

1980.11.19

발행인: 서울특별시청 박영수

편집: 문화공보관 박종우

전화 75-7834

인쇄: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보

차 례

○ 규 칙

제 1878 호: 서울특별시도시가스공급조례시행규칙개정규칙..... 3

○ 교 시

제 383 호: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20

제 385 호: 도시계획사업(시장)시행허가.....21

제 386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21

제 387 호: 도시계획시설(학교)지적승인.....26

제 388 호: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변경결정.....26

제 389 호: 서울도시계획동치지구실효.....27

○ 공 표

제 335 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생산지정업체대체지정공고.....27

<이면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 336 호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생산지정업체지정취소공고.....	28
제 337 호 :	도시계획시설(도로, 교량) 실시계획공람공고.....	38
제 338 호 :	이수지구(추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신청기간지정 공고.....	43
제 341 호 :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기간연기) 공람공고.....	43

◎ 예 규

제 396 호 :	서울특별시시유재산관리및처분업무시행세칙.....	45
제 397 호 :	서울특별시전산업무처리규정.....	45

규 칙

서울특별시 도시가스공급조례시행규칙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인
1980.년 11월 19 일

○ 서울특별시규칙제 1878 호

서울특별시도시가스공급조례 시행규칙 개정규칙

서울특별시도시가스공급조례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도시가스(이하 "가스"라 한다) 공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공사비기준) 조례제 3조제 2항제 3호 규정에 의한 공사비 기준액은 전설부 표준종별및 서울특별시 공사비 산출단가에 의한다.

제 3 조 (공급의 정지 및 시설폐지 예고) 조례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의 정지 또는 공급시설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제 1, 2호 서식의 예고서를 정지 및 폐지 10일전까지 가스전 소유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 조 (가스사용료등) ①조례 제 8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사용량의 검침은 별지제 3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 1항의 검침은 사용자의 가스 사용 신고후 개시되며 사용량은 해당 검침월에 조정한다.

③계량기의 고장이나 기타 사유로 계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 3회 의 평균 또는 전월 사용량으로 조정하고, 다음 검침시 재조정한다.

④계량기가 고장으로 교체되어 교체전 사용량을 계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량기 교체후 10일이상의 사용량에 의한 검침기간중 사용량으로 조정한다.

⑤계량기 성능검사 결과 속동이나 연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재조정한다.

$$\text{재조정량} = \text{기조정량} \times \frac{100}{100 \pm \text{오차}}$$

⑥공급시설의 폐지시 사용량조정은 조례제 8조제 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조례제 8조제 2항 단서규정의 "가스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공급의 중지 또는 정지로 인한 미사용의 경우를 말한다.

제 5 조 (납기및 납입고지) ①조례제 8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납기는 검침한 다음달 말일로 한다. 다만, 가스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소장은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납입금액, 납입장소, 납기일등을 기재한 제 4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납기마감 7일전까지 송달하여야한다.

제 6 조 (계량기 성능검사) ①소장은 계량기의 회전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성능검사의 결과 오차가 4/100를 초과할 경우에는 계량기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제 7 조 (대행업소 지정) ①조례제 10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사용 시설의 설치, 수리, 개조등을 담당하는자의 명칭은 서울특별시도시가스관리대행업소 (이하 "대행업소"라 한다)라 한다.

②제 1 항의 대행업소는 제 8 조에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고 별지제 5 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자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장이 지정한다. 이 경우 관할업무구역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소장은 필요에 따라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배관공사에 관한 면허소지자나 사업에 경험이 있는자를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소장은 대행업소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제 6 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한다.

제 8 조 (자격기준) 대행업소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기술능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고압가스 (기계 또는 화학) 기능사보 이상의 자격소지자 1인이상제용

2. 자본금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등 500만원 이상으로서 사업자 등록을 한자.

3. 시설능력 - 사무실 10㎡이상 전화기 1대 이상 보유

4. 장비 - 오스타천공기, 기밀시험기 펌프렛샤, 기타 필요한 장비

제 9 조 (승인취소)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대행업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한다.

1. 지정사항 및 자격기준을 임의로 위반하였을 때
2. 사전 신고없이 무단 휴업하였을 때
3. 조태 및 규칙을 위반하거나 기타 제반 지시사항을 이행치 않아 2회이상 경고 처분을 받았을 때

제 10 조 (시공비승인) 소장은 사용 시설의 설치수리 개조등에 소요되는 시공비를 년초에 대행업소의 신청에 의하여 승인 및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의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제 11 조 (안전점검) ①조례제 10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는 별지제 7 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실시할 경우에는 점검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2 조 (점검수수료 산정기준) ① 제 13 조의 안전점검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산정한다.

1. 인건비 - 정부노임단가표기준 (기술계) 적용

<p>2. 부대경비 - 인건비, 제잡비를 제 위한 실비</p> <p>3. 제잡비 - 계약사무처리규칙에 의한.</p> <p>제 13 조 (수탁업무의 수행 및 지침) 단 전점점 업무의 수탁인은 점점업무를 조배, 규칙, 위 관리 규정 및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p> <p>제 14 조 (신고) ① 조례 제 5 조 제 2 항 제 1 호 규정에, 의한 가스시설공사 준공후, 개시 신고는 별지 제 8 호 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 4 조에 의한 신고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스사용중지 및 시설제지 신고는 별지 제 9 호 서식 2. 중지 및 정지해제 신고는 별지 제 10 호 서식 ③ 조례 제 9 조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스사용량 신고는 별지 제 11 호 서식 2. 가스사용자 명의변경 신고는 별지 제 12 호 서식</p> <p>제 15 조 (과태료처분기준) 조례 제 13 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기준은 <별표 1> 과 같다.</p>	<p>제 16 조 (납입 독촉) 조례 제 14 조에 의한 체납액 및 가산금을 징수할 때에는 10 일 이내의 납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 13 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p> <p>제 17 조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① 가스사용료 및 기타 징수금의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기후 부과취소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입 발생할 때에는 다른 미납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을 지체 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충당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납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대행업소는 이 규칙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 8 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대행업소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그 자격을 보완하여야 한다.</p>																																
<p><별표 1> 과태료처분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금액</th> </tr> </thead> <tbody> <tr> <td>사용료 면탈목적으로 메타기 파손</td> <td>5 배</td> </tr> <tr> <td>메타기 이전 부정연결 사용</td> <td>5 배</td> </tr> <tr> <td>내관공사 (메타기 미설포함) 무단사용</td> <td>-</td> </tr> <tr> <td>정지중 무단사용</td> <td>-</td> </tr> <tr> <td>봉인파손 미신고 사용</td> <td>-</td> </tr> <tr> <td>중지중 무단사용</td> <td>-</td> </tr> <tr> <td>부정시공업자</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금액	사용료 면탈목적으로 메타기 파손	5 배	메타기 이전 부정연결 사용	5 배	내관공사 (메타기 미설포함) 무단사용	-	정지중 무단사용	-	봉인파손 미신고 사용	-	중지중 무단사용	-	부정시공업자	-	<table border="1"> <thead> <tr> <th>조례 제 13 조 제 1 항의 단</th> <th>조례 제 13 조 제 2 항 해당</th> </tr> </thead> <tbody> <tr> <td>5 배</td> <td>50,000 원</td> </tr> <tr> <td>5 배</td> <td>50,000 "</td> </tr> <tr> <td>-</td> <td>50,000 "</td> </tr> <tr> <td>-</td> <td>30,000 "</td> </tr> <tr> <td>-</td> <td>30,000 "</td> </tr> <tr> <td>-</td> <td>20,000 "</td> </tr> <tr> <td>-</td> <td>50,000 "</td> </tr> </tbody> </table>	조례 제 13 조 제 1 항의 단	조례 제 13 조 제 2 항 해당	5 배	50,000 원	5 배	50,000 "	-	50,000 "	-	30,000 "	-	30,000 "	-	20,000 "	-	50,000 "
구분	금액																																
사용료 면탈목적으로 메타기 파손	5 배																																
메타기 이전 부정연결 사용	5 배																																
내관공사 (메타기 미설포함) 무단사용	-																																
정지중 무단사용	-																																
봉인파손 미신고 사용	-																																
중지중 무단사용	-																																
부정시공업자	-																																
조례 제 13 조 제 1 항의 단	조례 제 13 조 제 2 항 해당																																
5 배	50,000 원																																
5 배	50,000 "																																
-	50,000 "																																
-	30,000 "																																
-	30,000 "																																
-	20,000 "																																
-	50,000 "																																

<별지 제 2 호 서식>

가스공급시 실패지 처분 예고서

- 1. 가스건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아파트 동 호
- 2. 가스건 소유자 :
- 3. 가스건 번호 :

귀하가 공급받고 있는 도시가스 시설은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 조례 제 5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할것을 예고합니다.

“공급시설 폐지 처분 사유”

- 1. 가스사용 신고없이 6개월 이상 가스공급을 받지 아니함.
- 2. 중지 기간이 경과하고도 중지해제 신고나 연기 신고가 없음.
- 3. 부정확 방법으로 가스를 사용하고 있음.
- 4.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을 임의로 증·폐 또는 이설함.

19 년 월 일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소장

—도시가스점검카드—																								
(전면)																								
1980																								
1				13				14				18												
A				가스전연료				용인구 연 명				연소기구수 개												
								모이라장시 유 구																
41				48				53				54				58								
점검		근기		지침수		사용량		조 정 량		설 수		〈가 스 조 정 액〉				계 정		확 인						
차 일												사용료		손 료		합계액		납계		정정원		심사		
19				23																				
12																						01		
11																							12	
10																							11	
09																							10	
08																							09	
07																							08	
06																							07	
05																							06	
04																							05	
03																							04	
02																							03	
01																							02	
12																							01	
59				63																				
주 소		구 동 아파트				번지 동		호 소		메타 위치		현관, 부엌 기타		발급 확인										
주 소										업태														
주 소										전화														

<후편>

월일	특기사항	사용자 확(인)	월일	특기사항	사용자 확(인)
1			7		
2			8		
3			9		
4			10		
5			11		
6			12		

가스메타이동사항							위반처분사항				
설치			철거			요금 사유	월 일	처분액		처분 유	
년	월	일	지침 번호	년	월			일	과태료	가스료	사

< 별지제 4 호서식 >

< 별지제 4 호서식 >

(가스) 납입고지서 및 납입필통지서

년	납기	개월분	정리번호	가스전번호
사 용 자 주 소 상 명				
납 기 내		조정량	가스사용료	손 료
		m	원	원
납부마감일		년	월	일
		납기후납부총액		원

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19 년 월 일

수납인
의

서울특별시 도시 가스 사업소장

(사업소용분용)



(가스) 원 부

년	납기	정리번호
사 용 자 상 명		
납기내 납부총액		납기후 납부총액
원		원
조정량	m	사용월수
		가스전번호

서울특별시 도시 가스 사업소

은행 지정
조합

(수납은행용)

수납인
의

(가스) 영 수 증

년	납기	정리번호
사 용 자 상 명		
납기내 납부총액		납기후 납부총액
원		원
조정량	m	사용월수
		가스전번호

위 금액을 영수함

서울특별시 도시 가스 사업소장

은행 지정

수납인
의

* 금융기관의 수입일
부인 및 채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별지 제 5 호서식 >

도시가스관리대행업소지정 신청서

주 소 :

상 호 :

성 명 :

상기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시가스공급 조례 제 10 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관리 대행업소로 지정 받고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1. 점포소재지 :

2. 기술능력 :

3. 자본금 :

4. 시설능력 : 사무실 및 점포 평, 전화기 대.

19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약력서 1부

2. 신원증명서 (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 1부

3. 재산평가조서 (법인의 경우 동기부등본) 1부

4. 자격증사본 (기술자) 1부

5. 가옥대장 및 임차계약서 1부

<별지 제 6 호서식>

도시가스관리대행업소지정서

사진

3 × 4

계 호

상 호 :

소재지 :

대표자 :

관할구역 :

위의 자를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조례 제 10 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 7 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가스관리 대행업소로 지정함.

19 년 월 일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소장

<별지 제 7 호서식>

사용시설 안전 점검 보고서

점검일 : 19 年 월 일

점검자 인

구분 순위	주 소	성 명	메타기	가 량	폭 크	환기설비	호 스	연소기	기 타	조 치 사 항	수요가확인	
											성 명	인

제 809 호 시 보 1980.11.19 64-13

321

<별지 제 8 호서식>

가 스 사 용 신 고 서

1. 가스전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아파트 동 호
2. 가스전소유자 :
3. 가스전 번호 :
4. 사용개시지침 :

서울특별시도시가스공급 조례 제 5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
거 도시가스불 사용료자 신고합니다.

19 년 월 일

신청자 (인)

(전화:)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소장 귀하

< 별지 제 9 호서식 >

가스사용 (시설폐지) 신청서
중 지

1. 가스전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아파트 동 호
2. 가스전소유자 :
3. 가스전 번호 :
4. 지 침 수 :
5. 가스사용중지기간 : 자 서기 19 년 월 일 (개월간)
기 서기 19 년 월 일
6. 사 유 :

상기 가스전을 도시가스공급 조례 제 4 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중지, 시설폐지) 신청합니다.

서기 19 년 월 일

신청자 : (인) (전화)

서울특별시 도시가스사업소장 귀하

* 가스요금 체납 사항

구분 납기별	가스사용료	용구 손료	계	가산금	납기 납부액	확인자	비 고
월납기						인	
월납기						인	
월납기						인	
계							

<별지제 10 로서식>

가스사용 (정지, 중지) 해제 신청서

1. 가스전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아파트 동 호
2. 가스전 사용자 :
3. 가스전 번호 :

상기 가스전을 도시가스공급조례 제 4 조 제 2 항의 규정에
외거 (정지, 중지) 해제 신청합니다.

19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화 :)

검침담당자확인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소장 귀하

<별지 제 11 호서식>

가스 사용량 신고서

1. 가스전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2. 가스전소유자 :
3. 가스전 번호 :
4. 가스사용량내역

(기준 : 1시간)

사용 월일	구분 사용기간	사용전	사용후	사 용 량	비 고
		저침수	저침수		
	- (시간)				
	- (시간)				
	- (시간)				

도시가스공급조례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신고
합니다.

19 년 월 일

신고자 (인)

서울특별시 도시가스사업소장 귀하

<별지제 13호서식>

<전면>

(도시가스) 독촉장 및 납입통지서

년	납기	정리번호		
사 용 자 성 명				
납기년월	가스사용료	손 료	계 산 금	합 계

납부여검인	
-------	--

수납인	
-----	--

위와 같이 독촉합니다.

19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사업소통보용



(도시가스) 독촉장 원부

정리번호	
사 용 자 성 명	
납기년월	합 계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사업소장

은행	수납인
지점	

수납은행용

도시가스 독촉장 영수증

정리번호	
사 용 자 성 명	
가스정번호	납기년월

위 금액을 영수함

은행	
지점	

<후면>

* 가스 안내

- 1. 가스요금은 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가스요금은 관계공무원이 징수하지 않습니다.
- 3. 체납된 가스요금은 현 소유자에게 송계되오니 가옥매매시 전체 체납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 본 독촉장의 체납액중 이의가 있으시면 즉시 도시가스사업소 과정과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383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적승인

-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255 호 (80.10.25) 로 시설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적승인조서

구분	등급	류별	연 장	기 점	상 점	비 고
신설	소토	1	190 m	봉납동 237-4 호	봉납동 442-1 호	
"	"	2	320 m	" 442-1 호	" 330 호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5. 이미 요금을 납부하셨으면 이 독촉고지서는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장소

시중 은행 본 지점

◎ 강제집행

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공급의 정지처분 또는 재산압류처분을 당하게 되며 정지처분을 해제할 때에 300원의 해제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 납부시에는 본 독촉고지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제 13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79.12.10) 의 권한위임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한다.

-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 과와 강동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11.18

서울특별시장

<p>◎서울특별시고시제 385 호</p> <p>도시계획사업(시장)시행허가</p> <p>1. 건설부 공고 제 82 호 (72.11.6) 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허가된 천호토지구획정리지구내 토지중 시장부지로 결정된 천호토지구획정리지구 886 구획(체비지)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허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 조와 건설부고시 제 463 호 (79.12.10)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1 과와 강동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p>	<p>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11.20</p> <p>서울특별시</p> <p>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천호토지구획정리지구 886 구획</p> <p>나. 사업의종류 및 명칭 종류: 도시계획사업(시장) 명칭: 둔촌상가(소매시장)</p> <p>다.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초동 18-8 성명: 둔촌상가 주식회사 대표 김길상</p> <p>라. 사업의규모: (지적) 1,003 평 3 홈(건축연면적): 1,776.39 평</p> <p>마.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 착수년월일: 허가일로부터 7 일 이내 준공예정일: 81.4.30</p> <p>바. 사용도는 수용할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p>	
<p>소재지</p> <p>서울특별시 천호토지구획정리지구 886 구획</p>	<p>지적</p> <p>1,003 평 3 홈</p>	<p>소유자</p> <p>둔촌상가주식회사 대표 김길상</p>
<p>사. 위치 및 계획명면도: 별첨(도면생략)</p> <p>아. 공사설계도면: 별첨(생략). 끝.</p> <p>◎서울특별시고시제 386 호</p> <p>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p> <p>1. 건설부 고시 제 198 호 (71.4.7) 및 동제 456 호 (79.12.5) 로 도시계획사업(도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p>	<p>도시계획법 제 25 조와 동법제 26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63 호 (79.12.10)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p> <p>2. 관계도서는 성동구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80.11.20</p> <p>서울특별시</p>	

<p>1. 사업시행의 위치 : 성동구 광장동 212번지 - 동소 401번지</p> <p>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강변 1로조 성공사 (제 2 공구)</p> <p>3. 사업규모 : 0 폭 : 30-50 미터 0 연장 : 1,240 미터 0 입체시설 1식</p>	<p>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p> <p>5.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인가일 ~ 1981.6.30</p> <p>6. 수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 소재지 :</p> <p>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의 토 지수용법제 4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p>
---	--

토 지 조 서

구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수용대상)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1	광장동	310-1	전	1,987㎡	310-2	전	434㎡	중구무교동 89	박관송
2	"	311	"	4,056	311-1	"	126	마포구신공덕동 13-13	신윤수
3	"	318-9	답	175	318-13	답	112	중구신당동 407-17	박순실
4	"	318-6	"	1,246	318-14	"	121	"	박순실
5	"	319-7	전	6,447	319-16	전	2,680	성동구광장동 252	박중현
6	"	199-1	"	162	199-6	"	49	성동구광장동 286-3	교외성
7	"	190-10	"	422	190-10	"	204	중구신당동 405-6	윤은영
8	"	194-4	림	176	194-6	림	243	중구올지로 2가 148	상현청
9	"	218-4	대	74,819	218-10	대	577	성동구광장동 218	대한계
10	"	218-8	"	2,950	218-8	"	529	"	"
11	"	199-4	전	53	199-4	전	53	성동구광장동 286-3	교외성
12	"	196-1	"	17	196-1	"	17	강남구서초동산 90-1	공호길
13	"	197-1	"	20	197-1	"	33	강남구서초동산 90-1 구성 APT 1 동 207 호	공호길
14	"	198-1	전	623	198-1	전	621	"	공호길
15	"	190-3	"	1,470	190-3	"	1,470	중구신당동 405-6	윤은영
16	"	200-10	"	20	200-10	"	20	경북달성군현동면중동 215번지	김검거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수용대장)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17	광장동	200-9	전	2㎡	200-9	전	2	경북달성군현동면중동215	김점개
18	"	200-4	"	56	200-4	"	56	"	"
19	"	307-6	대	20P	307-7	대	98	영동포구여외도동1번 지한양APT H동802호	김옥희
20	"	309-2	답	3	309-2	답	3	중구무교동89	박만송
21	"	308-1	"	678	308-3	"	37	"	"
22	"	200-1	전	827	200-12	전	651	경북달성군현동면중동 215번지	김점개
23	"	199-1	전	113	199-1	전	113	성동구광장동236-3	교외성인 의5인
24	"	310-1	"	1,553	310-4	"	414	중구무교동89	박만송
25	"	311	"	3,931	311-2	"	592	마포구신공덕동13-3	신윤수 박순실 의2인
26	"	318-8	답	1,125	318-16	답	505	중구신당동407-17	"
27	"	318-7	"	562	318-15	"	11	"	"
28	"	318-9	"	63	318-9	"	63	"	"
29	"	319-7	전	3,767	319-17	전	556	성동구광장동252	박중현
30	"	190-12	"	218	190-12	"	218	중구신당동405-6	윤은영
31	"	218-1	대	74,242	218-12	대	972	성동구광장동218	대한제지 연7인
32	"	199-5	"	10	199-5	"	10	중구신당동80-38	대한제지 연7인
33	"	195-3	전	255	195-3	전	255	성동구광장동218	대한제지
34	"	194-6	"	155	194-5	전	155	성동광장산21워커빌 APT 23동103호	이원순
35	"	194-4	임	233	194-4	임	233	중구율지2가148	상전청
36	"	210-2	대	46	210-2	대	46	성동구광장동414-1	대동화학
37	"	218-1	"	74,242	218-14	"	1,407	성동구광장동218	대한제지
38	"	218-1	"	74,242	218-13	"	3	"	"
39	"	218-1	"	74,242	218-7	"	1,713	"	"
40	"	218-8	"	2,950	218-11	"	2,421	"	"
41	"	212-1	전	1,859	212-1	전	1,859	마포구현석동93	박점숙 의9인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수용대장)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42	광장동	212-4	전	10	212-4	전	104	마포구현석동 98	박정숙 의 9인
43	"	401-4	"	60	401-7	"	14	종로구명륜동 1가 29	조홍재
44	"	401-6	답	1,289	401-9	답	260	종로구신문로 1가 1-222	고홍영
45	"	398-2	유	89	398-3	유	71	"	"
46	"	445	잡	40,032	445-18	잡	21	성동구광장동 445	무르르타
47	"	396-13	대	132	396-20	대	35	성동구광장동 396-13	허용녀
48	"	396-12	"	136	396-21	"	12	경기도광주군외촌면양 동리 331-1	여흥민씨 양호공파 중
49	"	396-6	대	165	396-22	대	30	성동구광장동 396-6	이해완
50	"	400-1	전	142	400-3	전	71	종로구명륜동 1가 29	조홍재
51	"	399-1	대	2,387	399-7	대	257	영등포구고척동 62-160	동양학원
52	"	399-3	"	106	399-3	"	103	성동구구외동 55-5	서석필
53	"	394-3	답	2,969	394-28	답	762	중구황학동 753	박수호
54	"	246-11	대	514	246-16	대	84	성동구광장동 291	박필원
55	"	246-6	"	331	246-17	"	62	"	"
56	"	246-14	"	236	246-18	"	27	"	"
57	"	244-2	"	94	244-32	"	18	성동구광장동 331-3	염윤태
58	"	244-28	"	331	244-33	"	43	"	"
59	"	244-18	"	318	244-34	"	21	"	"
60	"	239-4	"	116	239-8	"	11	서대문구연희동 1-86	김재철
61	"	239-6	"	651	239-9	"	56	"	"
62	"	239-7	"	18	239-10	"	8	"	"
63	"	240-8	"	412	240-10	"	86	성동구광장동 325	박종실
64	"	240-9	"	17	240-11	"	9	"	"
65	"	241-10	"	234	241-11	"	21	도봉구상계동 172-77	이용길
66	"	190-9	전	303	190-9	전	303	중구신당동 405-6	윤은영
67	"	193-1	"	90	193-1	"	90	"	이춘섭
68	"	192-5	천	76	192-5	천	76	"	"

순위	소재지	분할전 표시			분할후 표시 (수용대장)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69	광장동	192-3	천	112.00	192-3	천	112.00	중구신당동 405-6	이춘성
70	"	192-6	"	17	192-6	"	17	"	"
71	"	193-4	"	12	193-4	"	12	"	"
72	"	산81-3	임	12,939	산81-22	임	53	종로구신문로2가1-222고	홍명
73	"	산56-12	"	3,114	산56-16	"	87	종로구명륜동1가29	조홍제
74	"	233-5	대	10	233-5	대	10	성동구광장동 237-2	국계약부
75	"	212-7	전	224	212-7	전	224	서대문구창천동 13-47	정석규
76	"	212-6	"	133	212-6	"	133	성동구광장동 218	대한제지
77	"	213-3	"	155	213-3	"	155	"	"
78	"	213-4	"	136	213-4	"	136	동작구동작동 307	노홍
79	"	213-2	"	945	213-2	"	945	"	"
80	"	218-9	"	72	218-9	"	72	성동구광장동 218	대한제지
81	"	218-6	"	152	218-6	"	152	"	"
82	"	218-2	"	113	218-2	"	113	"	"
83	"	212-3	"	964	212-3	"	964	서대문구창천동 13-47	정석규

건물조서

순위	소재지	분할전 표시			분할후 표시 (수용대장)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1	광장동	396-13	연와조 광육개	2.1.평	396-13	연와조 광육개	2.1.평	광장동 396-13	이용원
2	"	210-3	세벽스레트	39 "	210-3	세벽스레트	39 "	광장동 218	대한제지
3	"	205 206	철근콘크리 트스레트	0.3 "	205 206	철근콘크리 트스레트	0.3 "	"	"
4	"	201-3	변전소시설	49 "	201-3	변전소시설	49 "	"	"
5	"	210-2	취수장	6 "	210-2	취수장	6 "	광장동 210-2	대동화학
6	"	218-7	"	7.5 "	218-7	"	7.5 "	광장 218	대한제지

◎ 서울특별시고시제 387 호

도시계획시설(학교)지적승인

1. 서고시 제 286 호(80.8.9)로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된 동대문구면목동 180-5 일대에 대하여 도시

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1 호(77.3.16) 권한위임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시청 도시계획 1 과와 동대문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가. 도시계획시설(학교)조서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 설	금성국민학교	동대문구면목동 180-5,7,8	9,087 ㎡ (2,748.7 평)	(도면생략)

1980. 11. 21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고시제 388 호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변경결정

1. 당시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을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63 호(79.12.10) 권한위임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 1 과와 강동구청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11.21
서울특별시장

o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변경결정조서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연구시설	강동구가락동 488 일대	128,308	
변 경	"	"	0	폐 지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389호
 서울도시계획통치지구실효

1. 서울도시계획통치지구중 자양지구
 가 건설부 고시 제 235 호 ('77.
 12. 3)로 결정된후 환부지역여
 선결되었기 그외 지역에 대하여는
 '79.12.4.자로 지적승인 시효가
 만료되었으므로, 도시계획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79.12.10)에 의
 거 실효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관할구청 도시전비과
 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
 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지
 한다.

1980.11.21.
 서울특별시장

○ 통치지구 실효조서

지구명	위 치	면 적 (㎡)	비 고
자양지구	성동구 구의. 자양동 일대	437,000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335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
 생산지정업체대체지정공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품 생산
 지정업체지정요령 제6조의 규정에 의
 지 수출품 생산지정업체를 다음과
 같이 대체 지정하였기 이를 공고한다.

1980.11.13.
 서울특별시장

대체지정업체명단

1. 서대문구

구 분	지정번호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생 산 품	비 고
변경 전	628	신정교역(주)	이규덕	홍제동 287-2	외의류	
변경 후	"	다미복장(주)	이판구	"	"	
변경 전	623	이풍공업사	장진수	연희동 519-41	구슬백	
변경 후	"	(주)이풍공업	"	연희동 519-37	"	

2. 은명구						
구 분	지정번호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생 산 품	비 고
변경 전	1411	금강합섬(주)	최충현	용암동 491-9	양 말	
변경 후	"	한서공업(주)	김현태	용암동 109-21	"	
3. 강서구						
구 분	지정번호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생 산 품	비 고
변경 전	1523	용창섬유(주)	김생수	염창동 63	염 색	
변경 후	"	서울염공(주)	김윤중	"	"	
4. 구로구						
구 분	지정번호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생 산 품	비 고
변경 전	917	농해실업(주)	채현년	가리봉동 481-2	견 직 물	
변경 후	"	"	채철	"	"	
변경 전	979	홍안공업사	심용규	독산동 1-8	낙시대부속품	
변경 후	"	홍안공업(주)	"	구로동 866	"	
5. 동작구						
구 분	지정번호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생 산 품	비 고
변경 전	1104	동창염직공업사	박정선	관악구상도동 255	염 색	
변경 후	"	신안염산(주)	"	동작구 "	"	
<p>◎서울특별시공고제 336호</p> <p>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 생산지정업체지정취소공고</p> <p>서울특별시중소기업 수출품 생산지</p>			<p>정업체 지정요령 제5조의 규정에 의 거 수출품 생산지정업체를 다음과 같이 취소하였기 공고한다.</p> <p>1980.11.13.</p> <p>서울특별시장</p>			

지정취소업체명단

지정번호	기업체명	대표자	공장소재지	지정년월일	수출품명	취소사유
107	부영전자공업(주)	최윤용	종로구송인동 183-13	75.12.13	축전기	무단전출
108	화건실업(주)	박종화	종로구송인동 204-11	75.12.13	비닐장갑	"
109	유미양행(주)	진철준	종로구창신동 447-12	75.12.13	피복류	폐업
110	남양물산(주)	홍진선	종로구신영동 240	75.12.13	가발	무단전출
202	삼화인쇄(주)	유진수	중구율지로 2가 15	64.11.18	인쇄	전출
204	임영장갑공업사	임의준	중구오장동 90-3	71. 3.22	피혁, 장갑	무단전출
209	크로바상사(주)	이강홍	중구충무로 4가 37	72.11. 8	여행용가방	"
210	서광사	김영배	중구명동 1가 72	73. 4.11	귀금속	"
212	주식회사삼중앙	이완순	중구입정동 9	73.10.26	피혁, 의복	폐업
610	대왕제약(주)	김홍완	중구만리동 210-2	67. 5. 4	인삼주	무단전출
301	동아피아노제작소	이영근	농대분구 강안동 43-12	76. 3.17	피아노, 건반악기	폐업
304	광성금속공업사	조재기	" 답십리동 2-12	65. 8.18	시계줄(반도)	"
307	성진스포츠실업(주)	이규행	" 면복동 191-87	75.12.29	운동구	"
308	중앙프랜스공업(주)	마용일	" 북동 351-2	74.12.29	프랑스	"
309	로코다야(주)	노경하	" 면복동 1029-1	77. 1.26	동철용완구	"
311	(주)미부사	김신웅	" 진동동 652-1	75.12. 3	베드시트	"

제 809 호

지

보

1980.11.19

64-29

929

지정번호	기업체명	대표자	공장소재지	지정년월일	수출품명	취소사유
313	동우섬유공업사	김동진	동대문구면목동 282-37	74. 8. 29	쉐타	폐업
316	범양프라스틱 물딩산업사	김운택	• 편목동 408-5	74. 9. 26	PVC 압출성형제품	무단전출
318	양진기업사	최갈열	• 북동 301-6	70. 4. 29	쉐타	장기휴업
326	(주)저울공사	이상범	• 중화동 428	73. 10. 26	가스미테케블	폐업
403	자이안트물산(주)	백용서	성동구구의동 211-1	73. 4. 11	양말	•
410	현대편물사	김상욱	• 금호동 2가 510	71. 3. 22	쉐타	•
411	인왕실업주	이주섭	• 침수동 2가 341-2	70. 11. 6	가발	•
417	신진직물공업사	손복만	• 상왕십리 396-16	65. 4. 23	쉐타	•
425	다남매산업(주)	김봉환	• 도선동 22	65. 3. 10	모직남방.면반쓰	•
427	천일섬유공업(주)	김정수	• 홍익동 315	66. 3. 10	쉐타	•
434	미진무역(주)	이현설	• 금호동 2가 106	72. 3. 10	앨범	•
435	동화섬유공업사	홍규성	• 금호 4가 548-1	73. 10. 26	쉐타	•
443	조양섬유공업사	김현식	• 능동 451	68. 10. 18	메리야스	•
444	아세아통상(주)	김병일	• 상왕십리 728-9	74. 6. 29	프라스틱모형인형	•
446	기양섬유산업사	오기복	• 행당동 292	68. 3. 29	생사. 면사	•
447	읍성산업사	송석호	• 마장동 493-2	71. 3. 22	쉐타	•
448	신성기업사	정연택	• 자양동 328-1	71. 7. 8	쉐타	•

54-30

제 809 호

지

보

1980. 11. 19

지정번호	기업제명	대표자	공장소재지	지정년월일	수출품명	취소사유
456	착원산업사	김병선	성동구하왕십리 995-1	70.11.6	색 타	폐업
462	소예산업사	이상숙	" 화양동 111-117	71. 8.31	인형, 완구	"
463	천지산업(주)	김동원	" 홍익동 50	69. 8. 1	스웨타	"
473	대동수산(주)	이두남	" 구의동 259-2	72.11. 8	말린오징어	"
477	신파기업사	백돈호	" 행당동 40-9	72.11. 8	색 타	"
479	공업수출포장공사	박영수	" 하왕십리동 832	72.12.29	인책판	"
482	(주)삼성기업공사	이조이	" 송정동 36-2	75. 7.29	오락기계	"
489	한상전자공업(주)	심명보	" 성수동 2가 289-284	76.10.30	전자방송보온병	"
494	대한주철제작소	김인배	" 구의동 320	74. 1.26	주물	"
499	제일탄소공업(주)	박재만	" 성수동 1가 211	74. 3.30	표백제, 황성탄소	"
4003	미화동의사제작소	곽희호	" 능동 457-908	74. 3.30	가구류, 등외자	"
502	(주)소나	김광중	성북구하월곡동 20	74.12.30	완구	"
503	자생당섬유공업사	조중근	" " 46-5	74. 9.26	메리야스내외	"
527	동화봉상(주)	인종건	" 잠위동 74-47	68. 5.29	가발	경기도이전
541	신창산업사	박기영	" 성능동 383-23	68.12.28	색 타	폐업
555	대동양행	김시철	" 중암동 40-2	73.10.26	완구	"
603	한신산업사	조동환	서대문구남가좌동 289-5	73.12.31	완구봉제	무단진출

제 809 호 기 보 1980.11.15 64-31

지정번호	기업체명	대표자	공장소재지	지정년월일	주요제품	비고
605	한국산업(주)	임영수	서대문구대현동 67-5	71. 8. 31	봉제	폐업
608	한국관광공업사	김광수	연희동 45-3	66. 3. 10	신형자수품	무단전출
609	아미전기(주)	김성원	홍제동 279-94	74. 7. 29	라디오카세트 레오	폐업
611	성신산업사	심유복	남가좌동 313	71. 8. 31	혜타	무단전출
614	성민기업사	서창덕	홍제동 174-5	69. 4. 16	혜타및봉제품	폐업
615	태평양산업	김정주	장천동 57-55	74. 2. 28	가죽백, 구슬백	무단전출
617	경원실업(주)	김학수	홍제동 104-2	75. 2. 4	엘범	폐업
618	삼호교역(주)	이종호	홍제동 157-73	77. 1. 22	가죽, 잡화	
624	광우기업(주)	조동철	대현동 67-5	74. 3. 30	인쇄, 군납	
634	삼일제작소	홍기춘	마포구상암동 235-1	74. 3. 30	관리용쇠	무단전출
701	동화공업산업사	탁광운	동교동 186-43	64. 11. 18	유기공업품	폐업
704	조흥공업사	배희철	도회동 181-36	73. 10. 26	공작용후쿠	무단전출
714	금강디자인센터	김중일	서교동 374-10	73. 10. 26	제도, 디자인	전출(빈첵)
720	벌창물산(주)	태석균	현석동 146	74. 6. 26	완구	무단전출
724	일강산업사	유재곤	망원동 292-8	71. 3. 22	예학야구그로브	
802	신공물산(주)	함현선	용산구한강로 2가 147	71. 3. 22	봉제품(가방)	
803	보성산업사	최행익	319	73. 10. 26	각종바스켓	폐업

32 제 809 호
1980. 11. 19

지정 번호	기업 이름	대표자	공 장 소 재 지	지정 년월일	수 출 품 명	직 소 상 유
809	삼성인쇄(주)	채부기	용산구원효1가42-4	64.11.18	인쇄조판및지형	건설
905	일진금속공업사	허진규	영등포구양명동1가254	75.6.30	콘크리트	(경기)
911	(주)동일주공소	이철규	" 양명동4가14	75.7.22	기계용주물, 벨브	(경기)
915	대한후토킹공업(주)	장준식	" 영등포동1가28	73.4.11	후토킹(재생섬유)	무단건설
919	동양식품상사	정영삼	" 문래동4가4	74.3.29	제철이, 식기	"
937	삼이신사	양관모	" 영등포동1가94-1	70.7.27	P.포필림	"
941	한성기업(주)	이대성	" 양명동1가220	68.3.29	허장화역장갑	패업
954	대성고무화학	정석규	" 당산동5가9	70.4.29	고무제품	무단건설
956	래광화학공업(주)	김준홍	" 양명동4가93	73.10.26	고무가무추진제 유화소다	패업
973	(주)관금공작소	윤홍범	" 도림동272-1	73.10.26	주물펌프기	수출실적부진
983	한일전제공업(주)	이창선	" 양명동6가97	77.1.	천정골재조립주력	이전(경기)
986	동우공업(주)	황경웅	" 양명동3가69	77.10.29	손톱깎기	패업
908	(주)다이야몬드사	박일규	" 대림동 (신도림동) 629	74.10.30	야구크림	무단이전
943	도영산업(주)	도청광	" " 742	72.3.10	장식용진구 조미오징어	"
901	유성기업(주)	유홍우	구로구오류동163-1	64.11.18	피스본 판링	패업
902	신성엘처리공업사	손호식	" 고척동152	74.9.26	금형공구	"
904	로얄프라스틱(주)	허진량	" 가리봉동371-1	74.10.30	프라스틱갑화	"

제 809 호
1980.11.19 34-33

지정번호	기업체명	대표자	공 장소 재 지	지정년월일	수출품명	취소사유
918	한국상역공사	장경환	구로구오류동 77	74. 7. 29	제철이, 식기	폐업
922	당인주물제작소	최대진	신도림동 271-32	74. 8. 29	주물	"
923	은진물산(주)	홍순호	시흥 2동 675		엘법	"
929	도진롱상(주)	박병기	천왕동 264-4	74. 7. 29	제타	"
939	진한상사	한석철	고척동 76-88	75. 6. 28	강신구	"
940	남양직물공장	서달주	독산동 161	68. 3. 29	시보리, 스카프	"
962	여화산업(주)	김준환	시흥동 276	74. 3. 30	인삼차	장기휴업
974	국진기업(주)	김인순	시흥동 663-5	73. 11. 30	식탁용 나이프	" (대기업)
976	신일산업사	이재철	시흥동 302	74. 2. 28	피혁제품	폐업
978	동서금속공업(주)	서경덕	천왕동 2-5	74. 3. 30	스텐레스	경영부실 (법인체무중)
980	동아섬유공업사	장병호	시흥동 498-2	76. 8. 24	가연사, 저지	수출실지부진
985	진도산업(주)	김영진	가리봉동 371-26	77. 1. 26	모피원단	폐업
987	삼양섬유공업사	김규남	독산동 290-67	78. 6. 9	아크릴사염색	"
960	동일계강(주)	장상준	구로동 566-1	72. 11. 8	철조망	대기업전환
1003	동우통상(주)	김제동	도봉구방학동 53-6	74. 2. 28	모피, 공제	폐업
1005	신양외류(주)	임광준	미아동 665-1	74. 12. 2	제타및장갑류	"
1008	동방농업(주)	윤천호	창동 629-3	77. 6. 24		"

64-34 제 809 호
1980. 11. 19

지정번호	기업체명	대표자	공장소재지	지정년월일	수출품명	취소사유
1010	대양염직공업(주)	최경수	도봉구미아동 90-3	76. 1.27	염색가공	폐업
1011	삼경나염공업사	박한수	" 창동 130-16	75. 4.30	염색가공	"
1014	알파실업(주)	고윤석	" 미아동 317-1	71. 3.22	피복	"
1015	(주)삼흥사	이상만	" 미아동 190-27	72. 3.10	완구	무단전출
1017	대림섬유공업사	최학모	" 창동 615-3	69. 4. 7	나이론사스	폐업
1018	창동섬유공업(주)	김용수	" 창동 594-1	72.11. 8	에타	"
1024	송죽기업사	박봉진	" 쌍문동 503-8	71. 8.31	에타	"
1025	성화교역(주)	김화섭	" 창동산 117-9	70. 7.27	에티	무단전출
1027	국제나이론(주)	김홍기	" 창동 108-4	73. 4.11	양말	"
1029	유아실업(주)	장상재	" 미아동 83-1	76. 8.24	에타	"
1031	한국종합물산	장강재	" 상계동 1107	74. 7.29	앨범	이전(경기)
1101	남창양말공업사	이순호	동작구내방동 433-32	73.10.26	양말	소재불명
1102	가림기업사	이성순	" 노량진동 24-16	73.10.26	에타	폐업
1107	남광산업사	남학운	" 대방 2동 227	74. 3.30	양말	소재불명 (무단전출)
1108	광성기계공업(주)	황외성	" 노량진동 151-14	74. 4.30	공작기계제재기	폐업
1109	삼성정공(주)	김봉산	" 본동 455-1	74. 5.29	시계(탁상시계)	전출(경기)
1111	미광산업사	이순재	" 내방동 435-3	70. 7.27	에타	소재불명

제 809 호

시

표

1980.11.19

54-35

지정번호	기업체명	대표자	공장소재지	지정년월일	수출품명	취소사유
1112	삼화세관 Co	전환우	동작구신대방동 570	64.11.18	관류	대기업전환
1113	일화모직공업 Co	변경연	" 신대방동 656-6	65. 4.23	세타	이전(경기)
1114	성하산업(주)	한기열	" 대방동 259-1	73.10.26	전기공예품	소재불명
1118	선린실업(주)	이시정	" 대방동 58-24	68. 3.29	자수공예품	폐업
1123	(주)성림공예사	이성진	" 상도동 325-10	70. 7.27	가늘섬	무단전환
1124	오오상사	탁한구	관악구봉천동 478-28	74. 7.29	목재완구	"
1201	보성직물공장	전순철	강동구풍납동 357-16	73.10.26	인전직물	폐업
1206	삼광섬유공업사	김성주	" 방이동 283-2	74. 6.12	세타	"
1207	광신화학공업사	박신희	" 천호동 71-1	76. 5.24	합성수지제품	"
1210	부이염직공업사	박인양	" 성내동 142	74. 6.12	염색	수출실적부진
1211	일신섬유(주)	김현진	" 성내동 33-2	74. 6.12	화섬직물	폐업
616	영인교역(주)	이승일	은평구증산동 131-70	70. 2. 7	가늘섬	"
635	극동공예산업사	서진호	" 증산동 65-18	74. 4.30	목각공예	"
1401	풍성기업(주)	김창홍	" 역촌동 218	73.10.26	범포지, 천막지	"
1403	성림통상(주)	신천옥	" 녹번동 144-65	74. 1.26	가방, 봉제	"
1405	동일섬유공업사	이정준	" 불광동 1-213	71. 3.22	세타	"
1407	신아교역상사	김용수	" 용암동 50-13	70. 1.27	조화	"

64-36 제 809호 시 보 1980.11.19

지정번호	기업체명	대표자	공장소재지	지정년월일	수출품명	취소사유
1409	(주)아승상사	백진일	은평구대조동 89-202	73. 4. 11	인삼차	폐업
1410	진성상역(주)	최홍용	" 역촌동 17-3	73. 4. 11	앨범	"
1412	성양물산(주)	한승민	" 갈현동 197-2	74. 6. 12	가발	"
1413	일신교역	김호	" 역촌동 57-5	74. 12. 30	검도구	"
971	오리표상크(주)	박유계	강서구신정동 308-1	73. 10. 26	수밤봉성크 목각, 석각	무단이전
1503	오오공예(주)	권영자	" 마곡동 77-13	73. 10. 26	나전칠기	폐업
1504	한성공예산업사	김정오	" 내발산동 53-6	73. 4. 11	나전칠기	"
1505	일정실업(주)	이문승	" 방화동 305-4	73. 12. 28	양말	전출
1507	승양제련공업사	심헌직	" 가양동 10-3	74. 12. 30	유기안료	"
1508	경봉무역(주)	이승화	" 묵동 191-52	74. 6. 12	우의	수출실적무
1510	원창물산(주)	김승림	" 등촌동 293	74. 6. 12	나이론 T 셔츠	대기업전환
1514	조광염직공업사	이연희	" 염창동 203-4	73. 4. 11	염색	장기휴업 (78.9~)
1515	삼광조자공업 Co	정광열	" 염창동 55	73. 4. 11	유리컵	대기업전환
1518	금용공업(주)	이명호	" 가양동 194-2	76. 4. 29	항공백	폐업
1519	광명봉관인(주)	이학수	" 등촌동 158	74. 7. 29	인쇄물	수출실적없음
1520	협창실업(주)	정영용	" 가양동 56-4	71. 3. 22	합성섬유	이전
1522	문봉비아산업(주)	한동진	" 염창동 31	72. 11. 8	식외유	"
1529	유일보온병(주)	여창득	" 화곡동 323-16	76. 3. 30	보온병	폐업
1530	배성에프공업(주)	진명혁	" 북동 121	76. 4. 23	에프공 합성수지세물 (가방)	이전
1103	동일진공(주)	이두희	강남구방배동 531-2	75. 9. 29	"	폐업
1119	(주)유현산업	변종수	관악구봉천동 16	74. 8. 12	가운업	"
607	한국갈포공업 Co	오창화	은평구승산동 107-1	66. 3. 10	갈포벽지	"

표 839호
지
표
1989. 11. 19
6437

◎ 서울특별시공고제 337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교량)
실시계획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제 8호 (76.1.21) 시
실결정고시 및 서울시고시제 14호
(76.1.22) 서울시고시제 371호
(80.11.6)로 결정고시된 반포대
교 (잠수교 2층) 공사 및 접속도로
(강변 3로) 이설공사구간내에 저속
되는 토지의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동법제 25조 2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
의 공람에 공하고자 이에 공고함.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는 이 공고로 갈음함.
3. 관계도서는 용산구청토목과에 비
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가. 공고장소 : 용산구청계시판
나. 공고기간 : 1980.11.19 ~
1980.12. 2
1980.11.29

서울특별시

“공람개요”

1. 사업장위치 : 용산구서빙고동 168 ~
강남구반포동 273
2. 사업의종류와명칭 : 반포대교 (잠수
교 2층) 건설공사
3. 사업의규모 : 본교 B=25m, L=1,475m
램프 및 지하차도 각 1개소
강변 3로이설 B=16m, L=1,620m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 : 인가일 ~
81.12.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
지수용법제 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주소, 성명

토 지 조 서

군 면

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소유자		비고
동리	지번				주소	성명	
보광동	39-1	건	28	22	보광동 80의 21	삼성여객	
"	40-1	"	31	16	"	"	
"	70-4	"	250	176	보광동 75의 1	장영환	
"	70-8	"	193	97	"	"	
"	36-13	대	190	145	종로구충학동 18의 8	장강재	
"	37-1	"	75	63	보광동 3의 1	박성관	
"	38-1	"	50	42	"	"	
"	132-8	"	8	6	후암로 345의 1	이희재	
"	132-9	"	1	1	보광동 132의 6	하정자	
"	132-14	"	31	3	"	"	
"	132-2	"	9	6	보광동 138	김성일	

소 재 지		지 목	지 적	편 입 지 적	소 유 자		비 고
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동빙교동	170-10	철	574	550	서빙교동 241-21	공영사	
서빙교동	241-56	"	50	24	"	"	
"	241-60	"	400	345	"	"	
한남동	540- 1	림	30	28	용산구신계동 12-3	대초실	
"	542- 3	대	78	2	종로구중학동 18-8	장강재	
"	542-13	"	945	60	"	"	
보광동	36- 6	"	30	30		서울시	
"	36- 7	"	2	2		"	
"	36-10	"	371	371		"	
"	37- 4	"	18	18		"	
"	38- 3	"	4	4		"	
"	87- 5	"	132	121		"	
"	129- 4	"	46	19		"	
"	130- 1	"	4	4		"	
"	130- 3	"	37	13		"	
"	132- 3	"	25	21		"	
"	132- 7	"	17	1		"	
"	132-11	"	3	3		"	
"	132-12	"	5	5		"	
"	137- 3	"	5	5		"	
"	139- 1	"	63	55		"	
"	143- 2	"	6	6		"	
"	144- 4	"	36	36		"	
"	129- 2	"	5	5		"	
"	29- 1	"	126	43		"	
"	29- 2	"	3	3		"	
"	39- 3	건	1	1		"	
"	39- 5	"	33	33		"	
"	40- 2	"	0.4	0.4		"	

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소유자		비고
동리	지번				주	소	
보광동	40-3	전	9	9		서울시	
"	70-5	"	7	7		"	
"	70-6	"	42	42		"	
"	87-6	"	27	27		"	
"	87-8	"	2	2		"	
"	131-1	"	8	8		"	
"	147-14	"	5	5		"	
"	39-4	"	6	6		"	
"	86-1	"	8	8		국	
"	86-3	"	10	10		"	
"	86-4	"	4	2		"	
"	146-3	도	5	5		국(철도청)	
"	84-1	"	687	350		국	
"	87-1	"	33	33		"	
"	88-2	"	11	6		국(철도청)	
"	131-2	"	24	2		"	
"	140-1	"	3	3		"	
"	140-3	"	19	2		국	
"	146-2	"	32	22		"	
"	147-3	"	5	5		"	
"	147-4	"	35	35		국(철도청)	
"	147-5	"	90	57		국	
"	147-10	"	44	44		"	
"	147-11	"	66	66		"	
"	147-12	"	35	35		"	
"	148-2	"	40	40		"	
"	148-8	"	92	63		"	
"	157-4	"	11	4		"	
"	157-1	"	117	87		"	

소 재 지		지목	지적	면적 지적	소 유 자		비 고
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보광동	157-4	도	130	103		국	
"	36-4	"	7	7		서울시	
"	37-2	"	78	48		"	
"	37-3	"	42	42		"	
"	38-2	"	45	41		"	
"	39-2	"	58	57		"	
"	40-4	"	54	27		"	
"	70-10	"	168	168		"	
"	70-15	"	57	57		"	
"	70-18	"	188	188		"	
"	87-2	"	58	58		"	
"	87-3	"	24	24		"	
"	87-7	"	80	80		"	
"	88-1	"	36	36		"	
"	130-4	"	73	73		"	
"	132-1	"	93	93		"	
"	132-4	"	17	17		"	
"	135-1	"	51	38		"	
"	138-1	"	13	43		"	
"	142-1	"	72	72		"	
"	142-4	"	30	21		"	
"	143-1	"	18	18		"	
"	144-2	"	11	11		"	
"	145-1	"	37	37		"	
"	146-1	"	42	42		"	
"	147-6	"	69	23		"	
"	147-7	"	89	3		"	
"	147-8	"	26	26		"	
"	147-26	"	73	9		"	

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지적	소유자		비고
동리	지번				주소	성명	
보광동	175-7	도	.	2		서울시	
"	130-5	"	104	18		"	
"	146-7	"	22	22		"	
"	83-5	구거	206	45		"	
"	87-11	"	84	84		"	
서빙교동	241-59	대	141	4		"	
"	241-74	철	40	40		"	
"	241-75	"	363	363		"	
"	271-80	도	150	150		국	
"	271-81	"	840	398		"	
"	241-11	철	70,574	-		"	
"	241-61	"	321	197		"	
구성동	63	도	1,144	63		"	
"	64	철	1,794	650		"	
동빙교동	170-1	"	737	40		"	
"	170-11	"	726	252		"	
보광동	70-27	전	67	8	보광동 75-1	장영환	
"	132-13	대	39	3	후암동 345-1	이희식	
"	137-5	"	48	5	보광동 137-2	서순남	
"	138-3	"	2	2	보광동 138	김성일	
"	149-5	"	2	2	남영동 61	김교석	
"	138-4	도	44	44	보광동 138	김성일	
"	147-25	"	21	18	" 168	오산학교	
한남동	542-2	대	3	3		국	
"	542-5	도	733	30		서울시	
"	542-8	대	160	160		"	
"	542-10	"	11	11		"	
"	542-11	도	60	60		"	
"	542-12	"	13	13		"	

서울특별시공고제 338 호

이수지구 (추가)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인가신청기간지정공고

1. 건설부 고시 제 343 호 (79.9.21)

로 결정된 이수지구 (추가) 토지
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토지구획정리
조합으로 하여금 인가신청토록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신청
기간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10 조
및 동시행령 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인가
신청기간을 지정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도시계획국 구획정
리과와 강남구청시민봉사실에 비
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1980.11.18.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명 : 이수지구 (추가) 토지
구획정리사업

나. 시행위치 : 강남 - 방배동 537 번지일대

다. 시행면적 : 85,942 평

라. 인가신청기간 : 1980.11.18 -
1981. 1.17.

◎서울특별시공고제 341 호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
경 (기간연기)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도시계획사업 경인,
영동 1, 영동 2, 영동 2 추가, 신당,
청량리, 잠실, 강안정, 예술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 (기간연기)
인가를 하고자 토지구획정리 사
사업법 제 31 조 및 제 3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단의 공람,
공합니다.

2. 사업계획변경 (기간연기) 인가에
따른 도서는 도시계획국 구획정
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1980.11.18.

서울특별시장

(사업 계획 변경 내역)

지구명	인가면적	기시공	미시공	인 가		당 초	변 경	비고
				공 고	일자			
경 인	2,212,373	1,680,701	532,672	제 6 호	68. 1.18	68. 1.18 -80.12.31	68. 1.18 -82.12.31	2 년
영동 1	5,128,000	3,626,000	227,000	.	68. 1.18	68. 1.18 -80.12.31	68. 1.18 -82.12.31	.
영동 2	2,954,000	2,500,000	454,000	제 27 호	71. 8.24	71. 8.24 880.12.31	71. 8.24 -82.12.31	.
영동 2 추 가	25,824	15,760	10,064	제 29 호	75. 2.14	75. 2.14 -12.31	75. 2.14 -82.12.31	.
신 당	459,588 중 65,000				40. 10.21	40.10.21 -80.12.31	40.10.21 82.12.31	.
청량리	332,805 중 40,410				40. 10.21	40.10.21 -80.12.31	40.10.21 -82.12.31	.
잠 실	3,374,304	3,225,000	149,804	제 125 호	74. 12. 6	74.12. 6 -80.12.31	74.12. 6 82.12.31	.
장안영	584,525	441,071		제 159 호	76. 11.20	76.11.20 -80.12.31	76.11.20 82.12.31	.
예술인 조 합	5,230			제 127 호	78. 4.22	78. 4.22 -80.12.31	78. 4.22 -81.12.31	1 년

64-44 제 809 호 시

보 1980.11.19

예 규

서울특별시 시유재산 관리 및 처분업
무시행세칙중 개정세칙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80.11.

서울특별시장 박영수 인

◎서울특별시예규 396호

서울특별시시유재산관리
및처분업무시행세칙

제 26 조 제 2 항중 "년 3 할 5 분"을
"년 2 할 7 분"으로 한다.

제 29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9 조 (매각재산의 사용승인) 년부
로 시유재산을 매수하여 대금을
2 분지 1 이상 기간내에 성실하게 납
부한자와, 일시불로 시유재산을 매수
하여 재무회계규칙제 136 조의 2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분납제한 경우
대금의 2 분지 1 이상을 기간내에 성실
하게 납부한자가 동재산의 재산가액
을 증가시킬수 있는 시설을 하고
자 할때에는 그 사용을 허가할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81.1.
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세규제 397호

서울특별시전산업무처리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
시 (이하 "시"라한다) 전산담당관
실에서 전산처리물 위하여 개발하
하거나 개발된 프로그램과 기계실
진공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프로그램이라 함은 전자계
산기의 조작 및 운영이 가능한
전자계산기 언어의 조합으로 이
록된 것을 말한다.

2. "프로그램수정"이라함은 기
본프로그램과 상이한 호프롬을 가
진 프로그램으로서 전환과 사용
언어의 변경을 말한다.

다만, 기본로직과 관계없는 데이
타 항목의 변경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업무개발"이라함은 프로그
램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하는 일체의 작업과 이미
등록된 프로그램을 고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작업을 말한다.

4. "렉크니칼 디스크립션"이라
함은 당해프로그램의 입출력 설계
작성, 페라그라프 및 자루틴에

상세한 설명을 붙여 작성한 프로그램의 설명서를 말한다.

5. "난테크니칼디스크립션" 이라함은 관리자용 프로그램 설명서로서 당해프로그램의 각 루틴마다 개발식 설명을 붙여 작성한 프로그램 설명서를 말한다.

제 3 조 (조의 편성) ① 전산담당관은 업무 성질별로 조를 편성 할수 있다.

② 조에는 조장을 두며 조장은 조별 업무 및 프로그램을 수행 및 관리한다.

③ 조장은 조별로 처리할 일일업무 상황을 업무일지 (제 1 호서식) 에 기록하여 담당계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 (작업계획의 작성) ① 조장은 연간 작업계획, 월별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계장에게 제출하고 주무계장은 각 작업 처리 계획총발표

를 작성한다.

② 연간 작업계획은 매년 1월 10일까지, 월별 작업계획은 매월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 (프로그램등록 및 폐기)

① 전산자로 처리를 위하여 개발된 프로그램, 및 폐기하여야 할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등록 폐기 신고서 (제 2 호서식) 에 의하여 등록 대장 (제 3 호서식) 에 등록 및 폐기하여야 한다.

등록된 프로그램을 수정한 경우와 업무처리상 긴급이나 별착등으로 처리한 프로그램도 또한 같다.

다만, 기본조직과 관계가 있는 경미한 수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프로그램 등록대장은 소관계장이 관리한다.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프로그램은 테크니칼디스크립션

제 7 조 (기계처리) ① 각종 프로그램을 전자 계산실에서 기계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작업의뢰서 (제 4 호 서식) 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작업의뢰서에는 담당계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계장 부재시에는 담당조장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또한 시간외 근무시는 각 조 근무자중 최상의 직급자가 대행 할 수 있다.

③ 작업처리는 접수 순위 (제 5 호 서식) 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8 조 (기계처리 확인) ① 기계조작 담당자는 의뢰한 작업이 종료된 때에는 당해 작업의뢰서에 처리결과를 기록 서명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작업은 그 결과를 접수처리 대장에 기록한 후 다음날 담당계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기계실 근무조편성) ① 전산담당관은 전자계산실의 일일근무시간을 2부 또는 3부제로 교대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작업의뢰서를 접수한 근무조가 기계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다음 근무조에게 기계처리 할수 있는 상태로 인계하여야 한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할

때에는 접수대장 (제 5 호 서식) 과 전자계산실 업무 일지 (제 6 호 서식) 를 정리 한후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 10 조 (기계고장보고) 기계의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계실 근무 조장은 즉시 기계수리 담당 직원에게 통보하고 기계고장 수리상황부 (제 7 호 서식) 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 11 조 (전자 계산실 출입자 통제) ① 전자계산실의 근무자 이외의 자는 기계실 출입을 제한한다. 다만, 수행중에 있는 프로그램의 조장 및 수행에 이상이 있는 프로그램의 프로그래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외부로부터 전화등 기타의 필요에 의하여 기계실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전산담당관의 승인을 얻어 출입하게 하여야 한다.

제 12 조 (천공처리) ① 프로그램 및 각종자료물 천공하고자 할 때는 천공의뢰서 (제 8 호 서식) 에 의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② 천공실 조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자료물 천공접수처리 대장 (제 9 호 서식) 에 기록 한후 천.검공원에게 작업을 할당 (제 10 호 서식) 하여야 한다.

③천공실 조장은 천·검공작업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작성하여야 하며, 천·검공원이 일일 작업한 내용을 확인하여 다음 서식에 기록한 후 담당 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1. 개인별 천·검공 실적부 (제 11 호 서식)
- 2. 업무별 천·검공작업 실적부 (제 12 호 서식)
- 3. 천공업무일지 (제 13 호 서식)

제 13 조 (비밀자료 관리) ①제 3 급 이상의 비밀자료 처리를 위한 프로그램의 수행은 해당 비밀 취급인가자가 주무 제장의 승인을 얻어 처리 하여야 한다.

제 14 조 (테이프 및 디스크 관리) ① 테이프는 테이프관리 대장 (제 14 호 서식) 에 등재한 후 테이프 관리 기록부 (제 15 호 서식) 에 외거 관리 하여야 한다.

②조별 테이프, 디스크 사용번호및 프로젝트는 업무성질별로 부여한다.

제 15 조 (전산처리 협의) 서산하기관이 전산처리를 의뢰하고자 할때는 전산담당관의 사전 협조를받어

야 한다. 다만, 매년 정기적으로 계속되는 작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매년 계속되는 작업이라도 비정기적이거나 기본조직의 변경, 차료의 대폭적인 증가등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사전 협조를 받아야 한다.

제 16 조 (자료등의 폐기) ①전산처리후 보관의 필요가 없는 자료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폐기에는 전산담당관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제 17 조 (기계가동과 정지) ①전자계산기를 가동하거나 정지할때에는 주무 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당일지시된 업무량을 처리했을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등록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등록 테이프 관리대장 정리, 프로그램 디스크입선의 작성등은 이 규정 시행일로 부터 6월 이내에 할수 있다.

<별표1>

조별사용테이프디스크및프로젝트

조 별	테 이 프	디 스 크	PROJECT-ID
1. 시험	EX 001-101		EXAM
2. 봉급	PR 001-050	PAY 001	PAYROL
	PR 501-530		
3. 재산세부과 재산세수납	JB 001-999	JSNAP 1	JAESAN
	JS 001-100	JSNAP 2	
	JS 501-550		
4. 수도조정 수도수납	SJ 001-300	SUDO 1	SUDO-J
	SJ 501-540	SUDO 2	
	SS 001-100		SUDO-S
	SS 501-520		
5. 자동차세	AT 001-200	CAR 001	AUTO-TAX
	AT 501-600		
6. 1계 개발무허가	FA 001- 40		FINANCE
	MU 001-		MUHUGA
7. 2계 개발	AR 001-	DEVE 01	AUTO-REG
	AR 501- 5		LICE-GAS
8. 면허세 도시가스수납 도시가스조정	LI 001- 30		
	GS 001- 30		
	GJ 001- 30		
9. 서무			G-PLAN
10. 산업대			CITY-UNIV
11. 가 타			CITY-HALL

<제 1 호서식>					
업 무 일 지	년 월 일				
1. 전일 업무 처리내용 (처리내용) (특기사항)					
2. 금일 작업 예정					
3.明日 작업 외퇴 예정 (기계실투근 PUNCH외퇴)					
4. 지시사항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제</td>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계 장</td> </tr> <tr> <td style="height: 50px;"></td> <td style="height: 50px;"></td> </tr> </table>	제	계 장		
제	계 장				

< 제 2 호서식 >

프로그램 등록 (폐기) 신고서

조별

PROJECT-ID:

RUN-ID :

PROGRAMMER:

ACCOUNT-ID:

작업내용 :

사용언어 :

STEP수 :
(카드매수)

특기사항 :

19 년 월 일

신 고 인

(인)

<제 4 호서식>				
<u>작업 와 퇴서</u>				결 조장 재 장
No.				
외 퇴일 시:	월 일 시 분			
외 퇴 자:				
SECTION:				
RUN-ID:				
업무구분:				
작업구분:				
예상시간:	시	분		
용 지:	부	매		
형 식	TYPE	VSN	CATALOGUE-FILE	I/O
TO OPERATOR				
TO PROGRAMMER				
OPERATOR 확 인	월 일 시 분	처리자		
※ 뒷면에 RUN-CHART 요양함.				

64-54 계 809 호 시 보 1980.11.19

<제 5 호서식>									
접 수 매 장 (기재실)									
198 년 월 일 (요일)					결 재	담당	계	계장	과장
접 수 번 호	업 무 명	RDN- AD	외 뢰 인	접 수 시 간	인 계 시 간	비 고			
금일접수건수		처리건수		미처리 건수		조장 확인			

(제 6 호 서 식)

기 계 실 작 업 일 지

1. 근무 상황

1978년 월 일 (요일)

구 분	조 별	조	조
근 무 시 간			
가 동 시 간			
작 업 계 획			
작 업 실 적			
미 결 사 항			
씨 스템 장애 사항 및 특 기 사 항			
근 무 자	조장	①	조장 ②

2. 퇴직시 점검사항

구 분	검 점	이 상 유 무		현 황 및 대 책
		유	무	
시 스템	C P U.			
	Disc Drive			
	Tape Unit			
	Printer			
	Card Reader			
부속	기 타			
	전 기			
속 설	합 은 하 습 기			
	기 타			
검 점 시 간		년 월 일		시 점검자 ③

제 809 호 시

보 1980.11.19 64-55

942

(제 8 호서식)

천공의뢰서

198

1. 소속 :

2. 작업명 :

3. 의뢰자 :

4. 예상건수 : 건

5. 완료요구기한 : 년 월 일

6. 기타 :

(제9호서식)

천공접수처리대장

담당	계	계장	파장

년 월 일

접 수						처 리			비 고
접수일자	소 명	의 퇴 자	작 업 명	완료요구일	예상건수	완료일자	처리건수	수령자	

64-58 제 809 호 시

1980.11.19

(제 10 호서식)

No.

업무명

작업명

카드 천 검 공 지 시 서

천 공

검 공

1. 년 월 일

1. 년 월 일

2. 천공자 3. 기계번호

2. 검공자 3. 기계번호

4. 작업시간 시 분 부터

4. 작업시간 시 분 부터

시 분 까지

시 분 까지

5. 천공전수 건

5. 검공전수 건

6. 기계공장 시 분 부터

6. 오천공 건 7. 중부 건

시 분 까지

8. 누락 건

944

제 809 호

지

지

1980.11.19

64-59

(제11호서식)

개 인 별 천 · 점 공 실 적 부

등 급	성명	천·점공		월일		월일(월)		월일(화)		월일(수)		월일(목)		월일(금)		월일(토)		월일(일)		순위	주계	순위	주계
		천	점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주계	주계	주계	주계
상	천	운	순																				
상	강	영	욱																				
상	정	마	욱																				
상	장		경																				
상	홍	철	욱																				
상	이	연	욱 ㉔																				
상	표	재	권																				
상	황	순	희																				
상	정	진	하																				
상	박	운	정																				
하	원	경	자																				
하	홍	성	금																				
하	이	인	순																				
하	진	혜	영																				
하	이	전	욱 ㉕																				
하	김	정	입																				
하	안	선	희																				
하	정	진	재																				
합		계																					

61-69 제 809 호

서

보

1980.11.19

(계 12 부서)

업무별천공작업실적부

작업명	의뢰조 및 의뢰자	일 정		예 상 작업량	작업진도				미처리 건 수	비고
		의뢰일	완료요구일		천공건수	점공건수	평균건수	평균매수누계		
합 계										

결 재	조 장	계	제 장	과 장
--------	--------	---	--------	--------

945

제 809 호 시 보 1980.11.19 64-61

(제 14 호 서 식)

TAPE 관 리 대 장

REEL ID	업무명	수 록 내 용	보관일	보 존 기 간	사 용 자		해 제 (폐 기) 일 및 해 제 (폐 기) 자	비 고	결 정				
					성 명	인			과 장	제 장	계	담 당	

(제 15 서식)

MAGNETIC TAPE 관리 기록부

REEL-ID

총일련번호

지급일자

구 입	년월일	MAKER	길 이	ftdensity	BPI	회기	년월일
업 무 명	작성년월일	내 용	보존기한	원래 월일	대급자	보 수	년월일
							장애 상태
							조치 사항

내용 FORMAT 작성년월일 ... |BLOCK= RECORDS |RECORD= CHARACTERS CLEANING년월일

1	내용 FORMAT 작성년월일 ... BLOCK= RECORDS RECORD= CHARACTERS	1
2	내용 FORMAT 작성년월일 ... BLOCK= RECORDS RECORD= CHARACTERS	2
3	내용 FORMAT 작성년월일 ... BLOCK= RECORDS RECORD= CHARACTERS	3
4	내용 FORMAT 작성년월일 ... BLOCK= RECORDS RECORD= CHARACTERS	4
5	내용 FORMAT 작성년월일 ... BLOCK= RECORDS RECORD= CHARACTERS	5
6	내용 FORMAT 작성년월일 ... BLOCK= RECORDS RECORD= CHARACTERS	6
7	내용 FORMAT 작성년월일 ... BLOCK= RECORDS RECORD= CHARACTERS	7
8	내용 FORMAT 작성년월일 ... BLOCK= RECORDS RECORD= CHARACTERS	8
9	내용 FORMAT 작성년월일 ... BLOCK= RECORDS RECORD= CHARACTERS	9
10	내용 FORMAT 작성년월일 ... BLOCK= RECORDS RECORD= CHARACTERS	10
11	내용 FORMAT 작성년월일 ... BLOCK= RECORDS RECORD= CHARACTERS	11

270mm X 190mm

서울특별시전자제산실

64.64 제 809 호

보

1980.11.19

947